

◆양주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전문위원 이 재호 입니다.
 - 「양주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4월 25일 제출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4월 4일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 「지역보건법」 제26조, 「결핵예방법」 제43조, 「모자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처분 통지를 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잘못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정함(안 제3조)
-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미납시 강제 징수 전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하도록 정함(안 제4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관할법원에서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 안 제2조 별표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의 위반사항은 「모자보건법」 시행일인 2006년 6월 8일부터 적용하도록 정함(안 부칙)

○ 과태료 부과기준은 (안 별표)

1. 지역보건법 제18조 위반사항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시에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그리고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각각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결핵예방법 제25조 위반사항으로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격리입원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모자보건법 제8조제3항(임산부의 신고등), 제15조의4제1호(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5제1항(건강진단),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산후조리교육), 제15조의7제1항(보고 · 출입 · 검사 등),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 · 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5조의14(명칭사용등의 제한등)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각각 30만원부터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 검토의견

-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와
-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역보건법」 제26조, 「결핵예방법」 제43조,

「모자보건법」 제27조의 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흡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안 별표 제1항제1호의 「지역보건법」 위반의 경우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은 대부분이 진료 의료기관이 양주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양주시에 와서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속성을 갖는 행위가 아니어서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을 시 주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차수(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